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7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 김도읍 • 주진우 • 조지연

박형수 · 조승환 · 박대출

김형동・구자근・윤한홍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조(「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률 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피성년후 견인·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법률 제1404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第9條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	
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	
다.	<u>.</u>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 피한정후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2
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	
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 견인·피한정후견인

나. ~ 바. (생 략)

2. ~ 4. (생략)

③ (생 략)

법률 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 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u>피성년</u> 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 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 로 본다.

<u>.</u>				
1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u>				
<u>견인</u>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269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u>피성년후</u>				
<u> 견인</u>				
<u>.</u>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4046호 엽연초생산협동	법률 제14046호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	조치)
정규정에 따른 <u>피성년후견인</u>	<u>피성년후견인</u>
<u>또는 피한정후견인</u> 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	
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	
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